



제1773호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 | | | | | |
|-----|---|----------|-----------------------------|-----------|---|
| ○ 규 | 칙 | 제 1113 호 | 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기 획 예 산 과 | 2 |
| ○ 규 | 칙 | 제 1114 호 |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여 성 가 족 과 | 6 |

공 고

- | | | | | | |
|-----|---|-----------|---|-------------|----|
| ○ 공 | 고 | 제 7 4 9 호 | 2023년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 식 품 위 생 과 | 11 |
| ○ 공 | 고 | 제 7 5 2 호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발견사실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 21 |
| ○ 공 | 고 | 제 7 6 1 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 22 |
| ○ 공 | 고 | 제 7 6 2 호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 24 |
| ○ 공 | 고 | 제 7 6 3 호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 26 |
| ○ 공 | 고 | 제 7 6 6 호 |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식 품 위 생 과 | 28 |

고 시

- | | | | | | |
|-----|---|---------|---------------------------------------|-----------|----|
| ○ 고 | 시 | 제 4 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도 시 재 생 과 | 43 |
| ○ 고 | 시 | 제 4 5 호 |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도 시 재 생 과 | 51 |

회 람								
----------------	--	--	--	--	--	--	--	--

규 칙

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4. 6.

남동구 규칙 제1113호

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각서(별지 제10호서식, 가집행선고금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배 상 금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청구인 (원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인 (원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청구인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금액 [확 정 금] [가 집 행 선 고 금] 금 원정							
원 고 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용액	가집행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금	이자	합계
계							
원고 , 피고 남동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증명원) 3.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각서(별지 제10호서식, 가집행선고금의 경우)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각 서

원고 피고 남동구 간의 법원 호 청
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
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원고 성명 (인)

주소

원고 성명 (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인)

주소

남동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소송 관련 서류 중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의변제 필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삭제 : 안 제22조제3항
- 임의변제 청구서 및 각서 양식 수정 : (별지 제9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

규 칙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4. 6.

남동구 규칙 제1114호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다.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라. 인천남동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인천논현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남동구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인천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 남동구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2. 위촉직 위원

- 가. 남동구 관내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 나. 공공의료기관의 장
- 다.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 라. 인천보호관찰소장

마.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제1항 중 “기관간 협조사항”을 “기관 간 협조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명이내”를 “2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 재
일시	20 . . .			심의방법			장소	
참석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현황								
안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위원회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3조제3항)
- 자구 수정 및 일부 용어 정비 : (안 제10조제1항~3항, 제10조제5항, 별지 제1호서식)
- 비밀 누설의 금지 및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조항 신설 : (안 제11조~제12조)
-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명칭 변경 : (별지 제1~2호서식)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23-749호

2023년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6.

남 동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3년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 사업

○ 사업대상: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중 200㎡이하 음식점 126개소

(청소비 지원 80개소, 후드 및 환기시설 개선 23개소, 정리 수납 컨설팅 23개소)

※ 접수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업소 수 조정 가능

○ 사업 내용 및 지원액

- 주방시설, 홀, 에어컨 등 청소비 최대 50만원 지원
- 노후된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청소비 최대 100만원 지원(영업주 자부담 20%)
- 조리장(냉장고 포함) 정리 수납 컨설팅비 최대 50만원 지원

☞ 업소 위생환경에 따라 최대 150만원 범위 내 신청 가능

예) 주방시설, 홀 등 청소비 + 노후된 후드 교체·청소비 지원 신청

○ 지원 자격 및 조건

- 자격: 영업장 면적 200㎡이하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중
 - ① 공고일 기준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업소
 - ② 2022년 연매출액 3억 미만인 업소
 - ③ 위생등급제를 신청한 업소
- 조건: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후 2년 이상 경영 및 관리 유지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이전 이미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주방환경개선(업소 청소 및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한 업소
- 불법건축물(가건물 등)이 포함된 업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 사업자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 여러 업소를 운영 중인 한 영업주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장
 - ※ 유사 사업: 주방환기시설개선 자금지원,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키오스크도입 자금지원, 입식좌석개선 자금지원 사업

○ 지원 취소 및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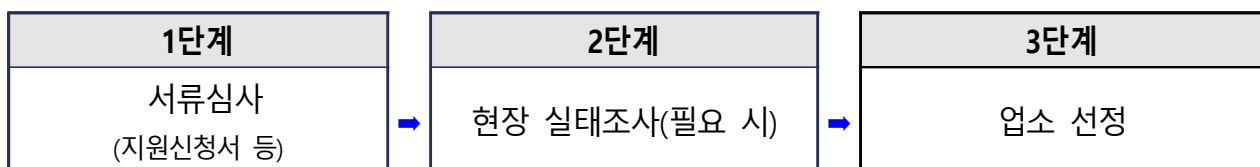
- 지원 업소에서 위생등급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을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2 구비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공통서류> 1.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2. 지원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청소 또는 수리 내역 포함 견적서 1부. (견적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6.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지방세·국세 납세 증명원 <주방위생환경개선 사업 추가 서류> 1. 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필수서류 중 미제출 자료 있을 시 선정 제외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완료 후 제출 서류> 1. 결과보고서 1부. (청소 및 시설 개·보수 내역 포함) 2. 청소 또는 수리 대금 지불 관련 서류 일체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3 선정방법

○ 선정단계



○ 선정 방법: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영업 존속기간, 2022년 연매출액, 우수음식점 지정 등 반영)

4 추진일정

1) 신청 및 접수 (4. 6. ~ 4. 27)	2) 대상자 선정 심의 (4.28. ~ 5. 12.)	3) 위생환경개선 실시 (5. 12. ~ 5. 31.)	4) 개선비용 지급 (6월말)
○ 신청 - 개별 신청 ○ 접수 - 전자 및 일반우편 방문접수	⇒ ○ 서류 및 현장 확인 ○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 대상자 선정	⇒ ○ 선정업소 위생환경개선 실시 및 비용 우선 지출 (선정업소 → 업체) ○ 위생환경개선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 (선정업소 → 구) ○ 현장 확인(구)	⇒ ○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비용 지급 (구 → 선정업소)

※ 영업주가 관련 업체에 위생환경개선 비용 우선 지출 후 남동구에 비용 청구

5 신청 및 문의

- 신청 기간: 2023. 4. 6.(목) ~ 2023. 4. 27.(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4.27.18:00까지 도착), 팩스 송부, 전자우편(sssong82@korea.kr)
※전자우편, 팩스 신청 시 전화 통지 필수
- 제 출 처: 남동구청 식품위생과 식품진흥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우21589)
- 지원 대상여부 통보: 2023. 5. 12.(금) 예정
 - * 유선 및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 *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출자료 목록	확인란
1.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청소 또는 수리 내역 포함 견적서 (견적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4.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영업신고증 사본	
6. 지방세 납세 증명서 (완납 증빙) (발급처 : 정부24(온라인 발급),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주방위생환경개선 사업 추가 서류	
1. 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홈페이지) ※ 발급용으로 제출	

★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은 음식점 영업주가 직접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함)

업 소 명:

신청자 서명:

(인)

붙임 2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서식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업소명		업 종	☐ 일반 ☐ 휴게 ☐ 제과		
영업소 소재지		영업자	성 명 생년월일		
음식유형	☐ 한식 ☐ 일식 ☐ 중식 ☐ 양식 ☐ 분식 ☐ 제과 ☐ 기타	전화번호	영 업 장 휴 대 폰		
업소구분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특색음식거리업소 ☐ 우수음식점(모범, 맛집, 외국인 이용 편리음식점) ☐ 안심식당 ☐ 기타		신고 면적	m ²	
신청사업	① 주방시설, 홀, 에어컨 등 청소비 지원 ②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③ 주방 정리수납	사 업 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액	원 원 원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에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 참여하는데 동의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영업자)

(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

1. 사업계획서
2. 견적서(세부사항작성)
3. 견적서 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붙임 3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2. 신청사업 :

3. 소요경비 : 원

3. 사업기간 : '23년 월 일 ~ 월 일

4. 사업내용

○ 신청대상 및 규모

-

-

○ 공사(청소) 및 개선 비용 (견적서 제출)

- 총 소요금액 : 원

○ 추진 일정 : '23년 월 일까지

※ 견적서 작성 시 항목별 세부견적(부가세 포함금액) 제출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업소명

성 명

(서명)

붙임 4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23년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필수 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신청 및 심사	사업신청서 접수부터 1년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및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신청서 접수부터 1년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업 소 명:

성 명: (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 5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업 소 현 황	신고번호		업 소명	
	성 명		전화번호	
	소재지			
	업 종	☐ 일반 ☐ 휴게 ☐ 휴게		
지원내용	☐ 주방시설, 환, 에어컨 등 청소비 지원 ☐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 주방 정리수납			
청소·교체 내역	“ 상세히 작성 ”			

- 붙임 1. 청소 및 시설 개·보수 현장 사진(전후비교 사진)
 2.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위와 같이 청소 및 교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업소명

성 명:

(서명)

사업평가 설문지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운행 정지된 차량이 우리구 관내에서 발견되어 불법명의 자동차 발견 통보 및 차량 인도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 주소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발견 사실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6. ~ 2023. 4. 21. (15일간)
3. 공고대상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신청자)	발견장소	보관장소
19노6958	링크MKZ	김*석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 22 논현휴먼시아 14단지 주차장	좌동

4. 공고내용

가. 상기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운행정지된 차량으로 차량소유자 및 차량관계인께서는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완료하시고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과태료 압류 해제 및 자동차책임보험 가입후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등록번호판 및 차량을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에 해당차량을 인수해 가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032-453-2821)

2023. 4. 6.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6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6.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23명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3. 4. 6. ~ 2023. 4. 21.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경과 후 개선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절차로 진행됩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032-453-2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시정조치(개선명령) 통지서 2,3월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인천미추 홀하5240	강*혁	2023.02.10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호(구월동, 탑**)
2	51모0819	주식회사 에**갤**	2023.02.09 이사불명	점멸동작장치 설치	216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안길 **-(운연동)
3	인천미추 홀하3937	이*호	2023.02.17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5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동 ***호(구월동, 구**트)
4	18더3604	김*욱	2023.02.17 폐문부재	점멸동작장치 설치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_**, ***호(구월동, 지**)
5	18구6937	유*원	2023.02.16 수취인불명	번호판 가림, 등화장치 불량(좌측번호등)	21662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동 ****호(논현동, **아파트)
6	163노9282	김*문	2023.02.24 폐문부재	번호판 훼손	215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구월동, 신**빌)
7	63어9951	장*수	2023.02.24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스티커)	216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 ****호(논현동, 푸**티)
8	20주3242	강*현	2023.02.24 폐문부재	리플렉터 LED 설치, 엠블럼 등화장치	216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번길 **, ***호(남촌동)
9	인천남동 타7943	정*문	2023.03.06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6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동 ***호(남촌동, **빌라)
10	48모9448	윤*환	2023.03.06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스티커)	21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 ****동 ***호(서창동, **엘**치*단지)
11	인천미추 홀하3284	이*석	2023.03.10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5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_*, *동 ***호(간석동)
12	인천83사 9257	서*영	2023.03.21 폐문부재	번호판 부착 불량	2160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_**, ***동 ***호(서창동, 인**엘**치*단지)
13	26로4584	안*근	2023.03.21 폐문부재	전면 하단부 미인증 LED 설치	21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동 ***호(간석동, **아파트)
14	인천남타4 873	김*주	2023.03.21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56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구월동, 롯데)
15	인천남동 파6892	최*현	2023.03.24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6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아파트)
16	인천미추 홀하5240	강*혁	2023.03.24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호(구월동, 탑**스)
17	16두3516	김*화	2023.03.24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5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리**타워)
18	경기성남 다1082	박*목	2023.03.24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번호판 오염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19	서울영등 포차4530	김*현	2023.03.24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5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호(만수동, **빌라)
20	인천84바 8145	하*수	2023.03.29 폐문부재	옆면표시등 적색 등화, 후부반사지 훼손	215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트)
21	인천남동 파7851	박*영	2023.03.31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스**움)
22	인천부평 아7091	김*범	2023.03.31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5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23	인천연수 다8959	김*수	2023.03.30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6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논현동, 인**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62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6.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 84루0345 외 2건 (첨부파일 참조)
2. 공 고 기 간 : 2023. 4. 6. ~ 4. 21.
3. 공시송달 내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032-453-2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23년 3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84루0345	임*락	2023.03.31.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식별불가)	215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동 ****호(구월동, 구**선**이)
2	377소7371	윤*정	2023.03.28.	수취인불명	번호판 미부착 운행	21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동 ***호(만수동, **맨션타운)
3	183로2094	최*정	2023.03.29.	폐문부재	번호판 미부착 운행	215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간**자*아파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6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 4. 6.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309러8457 외 6건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자)
※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함.
3. 공고기간: 2023. 4. 6. ~ 2023. 4. 21. 까지
4. 공고내용
 - 가. 납부장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 나.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다. 이의신청: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
 - 라.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익월까지 가산금3%, 그 후 증가산금 매월1.2%)됨
 - 체납처분: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
5. 문 의 처: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4)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차량번호	납부자명	주소	내용	반송일	과태료
1	309러8457	최*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번길 **, ***호(만수동, **다세대주택)	번호판 미부착 운행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3.02.24	521,000
2	인천남동타 4678	지*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동 ***호(구월동, 쓸**운*차)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3.02.24	31,260
3	경기고양하 3967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 ****호(구월동, **타워)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3.02.24	31,260
4	85버9364	강*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만수동, **다세대주택)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3.02.24	31,260
5	인천남동타 8002	구*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간**이아파트)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3.02.24	31,260
6	인천부평사 3899	조*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번길 **, *동 ***호(만수동, **다세대주택)	번호판 가림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3.02.24	521,000
7	인천부평아 5178	이*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봉인탈락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3.02.24	104,2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66호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6.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정·정비 및 위탁사업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업무 범위 확대 및 변경에 따른 제명 개정(제명)
-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목적 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비(안 제2조)
-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 제2조 신설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4조, 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 사업 운영자의 책임범위 구체화(안 제7조제3항)
- 공유재산 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식품위생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식품위생과,
전화: 453-8471, FAX 453-27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정·정비 및 위탁사업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업무 범위 확대 및 변경에 따른 제명 개정(제명)
-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목적 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비(안 제2조)
-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 제2조 신설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4조, 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 사업 운영자의 책임범위 구체화(안 제7조제3항)
- 공유재산 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어린이에게”를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에게”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남동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제2조제3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어린이 급식용”을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어린이 급식”을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급식소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센터장은 어린이와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센터의 운영, 예·결산 관리, 직원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u>어린이에게</u>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u>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에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법 제21조제1항 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

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남동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 제2조제3호-----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 ---

급, 영양관리

4. (생 략)

5. 그 밖에 어린이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제4조 (생 략)

제5조(수탁자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제6조(인력 등) ① (생 략)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4. (현행과 같음)

5. -----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

제4조(지원 대상) -----

---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급식소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6조(수탁자선정위원회) ① -----

제5조제2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인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으로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지원 등) (생략)

<신설>

제8조·제9조 (생략)

-- 제5조제2항-----

-----.

③ 센터장은 어린이와 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센터의 운영, 예·결산 관리, 직원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상위 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업 범위 확대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3년부터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2.7.28.)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확대
 - 기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 사업대상을 어린이급식소에서 사회복지급식소까지 확대하면서 사업비 추가 발생

나. 관련조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 2023.3월 현재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대상 328개소 중 328개소 관리(등록율 100%)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945,000천원으로,
 - 관리 대상의 증가 요인이 없으며, 오히려 어린이급식소는 매년 줄고 있어 사업비 규모는 지금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한다.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 2023.3월 기준으로 남동구 사회복지급식 대상 시설은 156개소로 이 중 25%인 39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사업비는 100,000천원으로,
- 향후 5년 이내 대상기관 전체를 등록·관리할 계획으로 매년 30개 기관을 신규 등록 가정한다. 다만 사업비 규모는 식약처의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편성한다.

☞ [1년차]70개소/1억원, [2년차] 100개소/3억원, [3년차] 130개소/3억원, [4년차]160개소 이상/4억원, [5년차 이상]160개소 이상/4억원

나. 추계 결과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사업비: 6,225,000천원(2023년~2027년)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50%, 시비25%, 구비2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783,750	933,750	933,750	1,008,750	1,008,750	4,668,750
세 출		1,045,000	1,245,000	1,245,000	1,345,000	1,345,000	6,22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783,750	933,750	933,750	1,008,750	1,008,750	4,668,750
	보조금	국비	522,500	622,500	622,500	672,500	3,112,500
		시비	261,250	311,250	311,250	336,250	1,556,25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261,250	311,250	311,250	336,250	336,250	1,556,250
	지방세		261,250	311,250	311,250	336,250	1,556,250
	세외수입						
지 방 채		-					
기 금		-					
공기업 특별회계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참고자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4. 6.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소로1-7호선)

3. 사업규모(변경)

- 금회 사업시행
 - 당초: B=10.0m, L=230.0m, A=2,986.7m²
 - 변경: B=10.0m, L=230.0m, A=2,732.0m²(감254.7m²)

※ 소로1-7호선 도로 결정현황: B=10.0m, L=1,440.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고시일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 용지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지정			편입면적(㎡) -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도로내	도로외	소계	도로내	도로외	소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고잔동	372-26	답	64	64		64	64		64	남동구 (인천광역시)					
2	고잔동	372-27	도	51	51		51	51		51	남동구 (인천광역시)					
3	고잔동	372-28	답	61	61		61	61		61	남동구 (인천광역시)					
4	고잔동	372-67	장	7	7		7	7		7	남동구 (인천광역시)					
5	고잔동	372-57	답	336	336		336	336		336	남동구 (인천광역시)					
6	고잔동	379-25	전	64	64		64	64		64	남동구 (인천광역시)					
7	고잔동	379-24	전	886	886		886				남동구 (인천광역시)					
				681				681		681						
8	고잔동	372-58	답	1	1		1	1		1	남동구 (인천광역시)					
9	고잔동	372-69	전	101	101		101				남동구 (인천광역시)					
				67				67		67						
10	고잔동	372-53	전	692	692		692	692		692	남동구 (인천광역시)					
11	고잔동	372-55	전	234	212		212	212		212	김**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				
											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 **				
12	고잔동	586-67	도	1,171	28		28				국 (국토교통부)					
				721				23		23						

번호	소재지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지정			편입면적(㎡) -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도로내	도로외	소계	도로내	도로외	소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3	고잔동	372-24	장	569		21	21				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				
		372-73	장	21					21	21						(분할) 지번변경
14	고잔동	372-10	장	1,467		8	8				삼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372-70	장	8					8	8						(분할) 지번변경
15	고잔동	372-56	잡	28		17	17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				
		372-75	잡	17					17	17	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 **	임진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426	근저당권 지상권	(분할) 지번변경
16	고잔동	379-5	잡	1,093		38	38				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379-32	잡	39					39	39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분할) 지번변경
17	고잔동	372-13	잡	845		126	126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				
		372-71	잡	126					126	126	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 **	임진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426	근저당권 지상권	(분할) 지번변경
18	고잔동	379-4	잡	1,072		85	85				강**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	인천 축산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99 (주안동) (구월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379-31	잡	89					89	89						(분할) 지번변경
19	고잔동	379-28	전	3		3	3		3	3	남동구 (인천광역시)					
20	고잔동	379-22	잡	122		51	51				강**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	인천 축산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99 (주안동) (구월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379-33	잡	50					50	50						(분할) 지번변경
21	고잔동	372-52	잡	430		68	68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 **				

번호	소재지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지정			편입면적(㎡) -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도로내	도로외	소계	도로내	도로외	소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27					50	50						(분할) 면적변경
22	고잔동	372-7	잡	294		8	8		20	20	조**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 **				
23	고잔동	372-59	잡	337		14	14		30	30	김**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				
											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2가) (안중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4	고잔동	372-11	잡	1,660		6	6		10	10	김**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				
											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2가) (안중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5	고잔동	372-54	전	56					10	10	김**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				신규
											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2가) (안중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9	고잔동	372-68	답	8	8		8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				제외 소1-10호선 이기
기정 10	고잔동	372-16	장	1,936		4	4				김**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				제외 소1-10호선 이기
합 계		기정		13,532	2,511	449	2,960									
		변경		6,106				2,259	473	2,732						

■ 지장물조사(기정)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고잔동	372-26 372-27	포장	120.4㎡	식	1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	한**	
			선별장	스레트 B=1.2 L=3.5	㎡	4.2			
			웬스	철재 L=10.0 H=1.1	㎡	11			
2	고잔동	372-10	출입문	철재 B=3.0 H=1.9	㎡	5.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가스공업㈜	
			웬스	메쉬웬스 L=5 H=1.9	㎡	9.5			
			웬스	EGI L=5 H=1.8	㎡	9			
			CCTV		개소	3			
			수도계량기		개소	1			
			적외선감지기		개소	3			
			포장	55.3㎡	식	1			
3	고잔동	372-57	출입문	EGI웬스 B=8.0 H=6.0	㎡	48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최**	
			담장	EGI웬스 H=3.0 L=70.0	㎡	210			
			계근대	철재[50톤 用] B=3.1 L=10.0	개소	1			
			사무실	컨테이너	개소	2			
			화장실	간이화장실, 정화조 없음	개소	1			
			CCTV		개소	5			
			구조물	철재, 고철분리수거대	식	1			
			컨테이너 바닥기초	콘크리트	식	2			
			포장	272.7㎡	식	1			
			동력	전기설비 포함	식	1			
			사무집기		식	1			
			제품		식	1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4	고잔동	379-24	창고	컨테이너 2.45x2.45x6.0	개소	62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100번길 ***	강**	
			사무실	컨테이너 2.4x2.4x6.0	개소	1			
			사무실	컨테이너 3.0x2.4x6.0	개소	2			
			화장실	간이화장실, 정화조 없음	개소	1			
			동력		식	1			
			외등		식	1			
			철계단		식	1			
			보안시스템		식	1			
			CCTV		식	1			
			우수관	600φ	식	1			
			출입문1		식	1			
			출입문2		식	1			
			사무집기		식	1			
			포장		식	1			
5	고잔동	372-7	출입문	EGI웬스 B=5.0 H=2.0	m²	10	인천시 연수구 선학로 ***	신**	
			웬스	EGI웬스 B=30.0 H=3.0	m²	90			

■ 지장물조서(변경) ※종전고시 누락사항

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수 량 (개소)	물건 소유자		비 고
	구	동						성 명	주 소	
1	남동	고잔	372-24	콘크리트 블록	L=8.0 H=1.1 (t=0.40)	8.8		한**	서울 양천구 목동 *** **	
				스레트	B=1.2 L=3.5	4.2				
				웬스	철재 L=10.0 H=1.1	11.0				
2	남동	고잔	372-28	출입문	철재 B=3.0 H=1.9	5.7		삼성**	남동구 고잔동 *** **	
				웬스	철재 L=14.5 H=1.9	27.6				
				CCTV			1			
				수도계량기			1			
3	남동	고잔	372-57	출입문	EGI웬스 B=8.0 H=6.0	48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	
				담장	EGI웬스 H=3.0 L=70.0	210				
				계근대	철재[50톤 用] B=3.1 L=10.0		1			
				사무실	컨테이너		2			
				화장실	간이화장실, 정화조 없음		1			
4	남동	고잔	379-24	창고	컨테이너 2.45x2.45x6.0		62	강**	남동구 논고개로 *** **	
				사무실	컨테이너 2.4x2.4x6.0		1			
				사무실	컨테이너 3.0x2.4x6.0		2			
				화장실	간이화장실, 정화조 없음		1			
5	남동	고잔	372-53	출입문	EGI웬스 B=5.0 H=2.0	10.0		이**	남동구 논현고잔로 *** **	
				웬스	EGI웬스 B=3.0 H=55.0	165.0				
6	남동	고잔	372-53	사무실	컨테이너 3.4x2.4x6.0		2	이**	남동구 논현고잔로 *** **	
				창고	컨테이너 2.45x2.45x6.0		36			
7	남동	고잔	372-7	출입문	EGI웬스 B=6.0 H=2.0	12.0		조**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 **	
				웬스	EGI웬스 H=3.0 L=22.0	66.0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45호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5.

남 동 구 청 장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이웃사촌과 3生하는 꽃피는 남촌
- 나. 위 치: 남동구 남촌동 354-1번지 일원
- 다. 면 적: 210,853m²
- 라.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마. 사 업 비: 322.48억원
 - 마중물사업: 240억원(국비 120억/시비60억/구비60억)
 - 지자체사업: 36.78억원
 - 부처연계사업: 1.25억원
 - 공기업사업: 32.45억원
 - 민간투자사업: 12억원

2. 계획의 목표

■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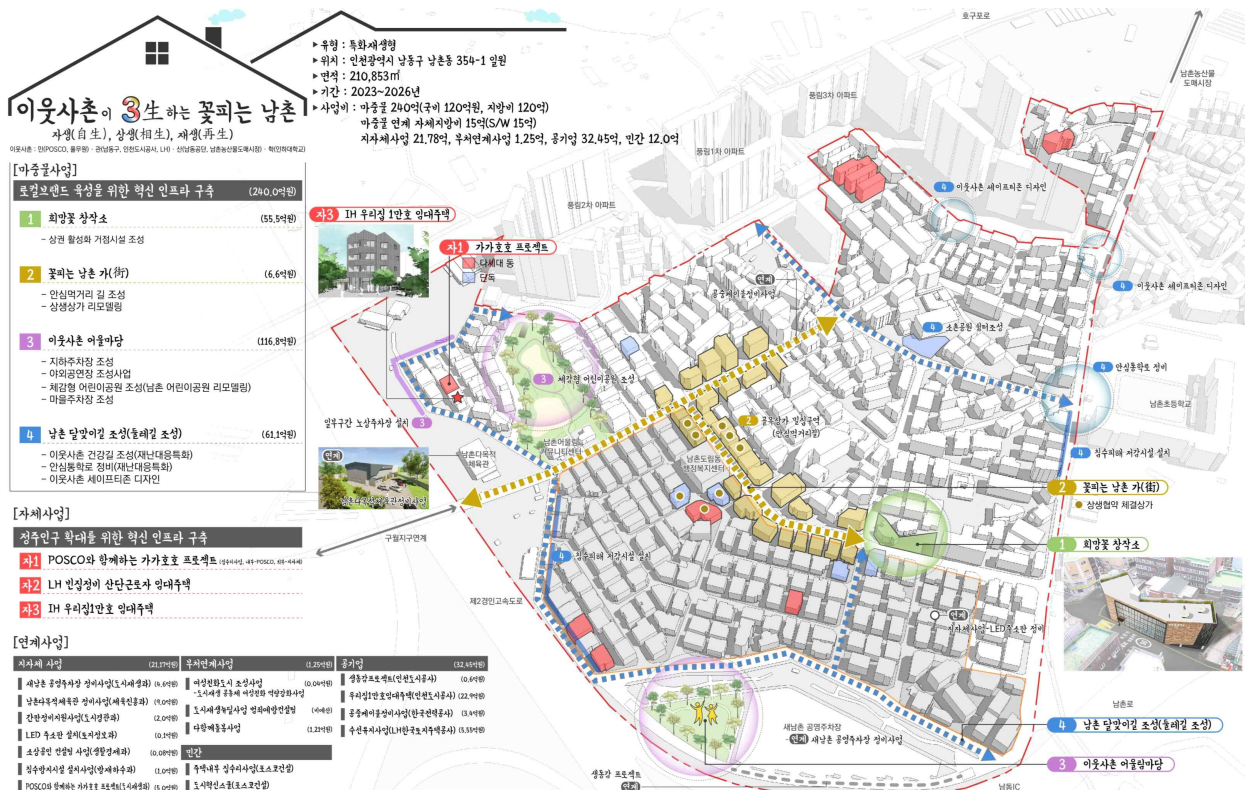


■ 목표

로컬브랜드 육성, 혁신인프라 구축, 민관산학 참여로
自生(자생), 相生(상생), 再生(재생)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강소(強小) 지역 육성!**

3.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파급효과

가. 사업구상도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구분	단위사업	사업내용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자생(自生), 상생(相生), 재생(再生)]	1. 희망꽃 창작소	·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 남촌 로컬푸드(수제두부, 수제청, 꽃식초 등) 제작 및 홍보·판매소 · 상권기획자·전문기획으로 남촌 골목상권 활성화「남촌상권발전소」 · (지자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2. 꽃피는 남촌가(街)	· 가로환경정비 (안심먹거리 길 조성) · 상생상가 리모델링(민간투자) · (연계사업)남촌동로 전선정리사업(한전) · (지자체)간판정비사업 · (지자체)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3. 이웃사촌 어울마당	· 이웃사촌 어울마당(1) 조성(공영주차장 부지) - 상부 휴게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공간 조성 - 하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추가 면수 확보 (약86면) · 이웃사촌 어울마당(2) 조성(남촌 어린이공원 부지) - 체험형 어린이공원 조성(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약54면)
	4. 남촌 달맞이길 (둘레길조성)	· 이웃사촌 건강길 조성 - [1구간] 불거리가 있는 산책길 조성 - [2구간] 공영주차장 진입로와 연계하여 소통길 조성 ⇒ 불법주차방지 및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 [3구간] 도로 조성(확장)하여 주차 및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 안심·스마트 통학로 조성 - 재난대응형 스마트 통학안전시설물 설치로 통학 환경개선

※ 향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파급효과

-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경제프레임 구축
-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쾌적한 소비환경조성 및 노후환경 개선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치	면적(규모)	사업내용	비고
공동이용시설	희망꽃창작소	55.5	남촌동 340외 1필지	1,027.7	상권발전소, 두부제작소 등	
주차장	이웃사촌 어울마당	71.8	남촌동 357-1	5,358	주차장, 문화·휴게공간 조성	
어린이공원	이웃사촌 어울마당	45	남촌동 376	5,994	체험형 어린이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도로	꽃피는 남촌가	6.6	남촌동로 일원	연장 560m (가로 230m, 세로 330m)	바닥정비, 골목가로환경 정비	
도로	남촌 달맞이길	61.1	남촌동 일원	연장 700m 연장 300m	바닥 정비, 노상주차장 설치	

5. 예산집행계획

구분	단위사업		총 사업비	도시재생 재정보조		자체 지방비	기타		부처 연계	단계별 재원 투입					비 고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 투입	'23	'24	'25	'26	
마 중 물 사 업	(소 계)		267	120	120	15		12		6.3	38.1	97.2	122.4	3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자생(自生), 상생(相生), 재생(再生)	1. 희망꽃 창작소	55.5 (70.5)	27.8	27.7	15				6.3 (부지 매입)	27.7 (지자체 4.0)	24 (지자체 4.0)	9.5 (지자체 4.0)	3 (지자체 3.0)	
		2. 꽃피는 남촌가(街)	6.6 (18.6)	3.3	3.3			12				8.2 (자부담 6)	10.4 (자부 담 6)		
		3. 이웃사촌 어울마당	116.8	58.4	58.4						10.4	55.4	51		
		4. 남촌 달맞이길 (둘레길조성)	61.1	30.5	30.6							9.6	51.5		
기 타 사 업	(소 계)		55.48			21.78	32.45		1.25						
	지자체		21.78			21.78				15.78		3	3		
	부처연계		1.25						1.25	1.25					
	공기업		32.45				32.45			5.7	27.9	8.8	18	5.3	

6. 공공 및 민간 자원조달계획

구분	단위사업	사업비(억원)								비고
		계	도시재생 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민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계		322.48	120	120	0.57	0.68	36.78	32.45	12	
마 중 물 사 업	계	267	120	120			15		12	
	1. 희망꽃 창작소	55.5 (70.5)	27.8	27.7			15			
	2. 꽃피는 남촌 가(街)	6.6 (18.6)	3.3	3.3					(12)	
	3. 이웃사촌 어울마당	116.8	58.4	58.4						
	4. 남촌 달맞이길 (둘레길 조성)	61.1	30.5	30.6						
지 자 체 사 업	계	21.78					21.78			
	새남촌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도시재생과)	4.6					4.6			
	남촌다목적체육관 정비사업(체육진흥과)	9.0					9.0			
	간판정비지원사업(도시경관과)	2.0					2.0			
	LED 주소판 설치(토지정보과)	0.1					0.1			
	소상공인 컨설팅사업(생활경제과)	0.08					0.08			
	POSCO와 함께하는 가가호호 프로젝트(도시재생과)	5					5			
	침수방지사설설치사업(방재하수과)	1					1			
부 처 연 계 사 업	계	1.25			0.57	0.68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 공동체 여성친화 역량강화사업(여가부)	0.04			-	0.04				
	도시재생뉴딜사업 범죄예방컨설팅(경찰청)	-			-	-				
	다함께돌봄사업(복지부)	1.21			0.57	0.64				
공 기 업	계	32.45						32.45		
	생동감프로젝트(인천도시공사)	0.6						0.6		
	우리집1만호 임대주택(인천도시공사)	22.9						22.9		
	공중케이블정비사업(한국전력공사)	3.4						3.4		
	수선유지사업(LH)	5.55						5.55		

7.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구분	주체	시기	내용
자체 성과관리	남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남동구 전담부서	연2회 (상반기/ 하반기)	-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점검 - 활성화계획의 효과 및 성과를 가시적으로 평가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국토교통부/ 남동구	연1회	- 매년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배포 - 재난대응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난재해 적용 기술에 대한 실시간 현황 및 모니터링 선제적 대응 -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지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8.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9. 관련서류 열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803)
 -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032-473-7169)